

《2022. 6월 2차》

청렴메아리

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
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**관심**과 **참여**가 매우 중요합니다.

2022년 신년화두 慎終謨始 (신종모시)

『맺음을 증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자』



청탁금지법 주요 판례 : 선물 편

청렴^한수원

관 련 근 거

○ 청탁금지법 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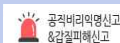
-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·후원·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
관 련 판 례

- OO시 A센터 소장으로 근무 중 공로연수 파견에 앞서 퇴임식을 진행하였는데, 해당 지역의 사단법인이 퇴임식 참여 후 퇴임기념선물로 행운의 열쇠(금 2돈, 38만원 상당) 제공
→ 퇴임식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, 소장 업무에서만 물러나는 상황이었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
- △△고등학교의 야구부감독이 운동복 제작 업체B에서 제작한 유니폼으로 학교유니폼을 교체 후 34만원 상당의 본인 유니폼을 무상제공 받음
→ 야구부감독도 학교법인의 직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
- □□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가 스승의날 기념행사에서 본인의 논문지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던 학생들로부터 37만원 상당의 선물, 케이트, 식사 등을 제공받음
→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교직원이기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고 지도를 받을 예정인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향후 지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

부조리
신고

♣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(시 홈페이지 하단배너



클릭, 케이휘슬 연결)

♣ 감사관 핫라인(☎031-221-3650), 부패·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